

4.1.30 보안시스템개인정보관리운영규정

제정 2011. 10. 25.

개정 2018. 07.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 “본교”)의 보안시스템에 기록된 개인정보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교 전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7.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9. “보유부서”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3조(총괄책임자, 운영책임자 지정) 총괄책임자는 사무처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정보전산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7.26.>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정보의 수집은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자료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공장소에 설치된 설비에 의하여 수집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 보유부서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등) ① 보유부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유부서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보유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보유부서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부서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유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보유부서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보유부서에서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제공부서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보유부서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처리정보의 공개 절차

제9조(공개절차) ① 정보공개는 본교 “정보공개 규정”을 준용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처리 내용을 보유부서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한다.

제4장 기 타

제10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의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